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0. 4. 20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0. 4. 2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0. 4. 2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가. 제안이유

○ 부천시에서는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 도시가스 수요자에게 저리대출을 통한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 가구당 지원비를 중액 현실에 맞는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 조성된 기금을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예치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범위를 시와 금고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 함으로 기금의 운용·관리에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금융자(안 제3조)

- 기금적립금 외에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을 융자할 수 있음

 ○ 기금의 용도(안 제5조)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 사용할 시설로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비

 ○ 융자의 조건(안 제9조)

- 대출한도액을 가구당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주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내로 함

 ○ 기금분임운용관 삭제(안 제14조) ○ 기금의 운용·관리

- 기금은 시급고로 지정된 안전하고 이자수익률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 운용·관리한다.(안 제3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없 음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7호
의결년월일	2000. 5. 3 (제78회)

제출년월일 : 2000. 4. 20

제출자 : 부천시장

 제안이유

- 부천시에서는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 도시가스수요가에 저리대출을 통한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 가구당 지원비를 중액 현실에 맞는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 조성된 기금을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예치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범위를 시와 금고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함으로 기금의 운용·관리에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골자

- 기금용자(안 제3조)
 - 기금적립금 외에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을 융자할 수 있음
- 기금의 용도(안 제5조)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 사용시설로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비
- 응자의 조건(안 제9조)
 - 대출한도액을 가구당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주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내로 함
- 기금분임운용관 삽제(안 제14조)
- 기금의 운용·관리 – 기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안전하고 이자수익률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 운용·관리한다.(안 제3조)

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의 “금융기관”를 “시금고”로 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금관리 시금고는 예치금의 범위 안에서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읍자대상자에게 기금을 응자한다. 다만,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시금고의 자체자금을 도시가스수요가에 응자할 수 있다.

제4조 중 “기금”을 “도시가스수요가 시설자금”으로 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 사용시설로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비

제8조제1항의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하며, 동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하고, “금융기관은 소정의 절차(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감리필증제출 및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여부 확인)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따라 기금을 대출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시금고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확인 절차를 거쳐 용자금을 대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의 “기금”을 “용자금”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한다.

①대출한도액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하 “2세대 이상 거주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주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내로 한다.

제10조 중 “금융기관은”을 “시금고는”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기금”을 “용자금”으로, 제1항 중 “기금”을 “용자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의 “기금”을 “용자금”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금융기관은”을 “시금고는”으로 “기금”을 “용자금”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및 제4호의 “기금”을 “용자금”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변경상의 통보”를 “변경사항의 통보”로 하며, “금융기금”을 “시금고”로 한다.

제13조 중 “금융기관은”을 “시금고는”으로 하고, “기금”을 “용자금”으로 한다.

제14조 중 “가스업무담당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가스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를 “가스업무담당과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p> <p>제3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u>금융기관</u>(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하되, 도시가스보급확대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p>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p> <p>제3조(기금의 관리) ①.....</p> <p>.....시금고</p> <p>(이하 “시금고”이라 한다).....</p> <p>.....</p>

② 시장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또는 대여금방식(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으로 관리한다.

③ 금융기관은 예치금의 범위 안에서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읍자대상자에게 기금을 융자한다.

④(생략)

제4조(융자대상) 기금의 읍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2(생략)

제5조(기금의 용도) (생략)

1. 사용시설자금 : 기존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사용시설 설치비

2. (생략)

제8조(읍자대상자의 선정 및 절차)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요가의 읍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내용에 따라 읍자대상자격여부를 검토한 후 읍자우선순위를 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읍자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읍자금을 신청하고, 금융기관은 소정의 절차(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감리필증 제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여부 확인)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따라 기금을 대출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급고.....
.....
.....

③ 기금관리 시급고는 예치금의 범위 안에서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읍자대상자에게 기금을 융자한다. 다만,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시급고의 자체자금을 도시가스수요가에 융자할 수 있다.

④(현행과 같음)

제4조(읍자대상) 도시가스수요가 시설자금의 읍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2(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 사용시설로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비

2. (현행과 같음)

제8조(읍자대상자의 선정 및 절차) ①
.....
.....
.....
.....
.....
.....
.....
.....
.....
.....
.....
.....

②(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제9조(용자조건) ① 대출한도액은 예치금의 범위
안에서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기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2퍼센트 내지 3퍼센트 낮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리용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 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리와 이자차액보조금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⑤ 용자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추가용자) 금융기관은 연도 중 수시로 회수되는 기금의 범위 안에서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추가용자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상환) ① 수요가에게 융자된 기금은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시중은행의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시장 또는 금융기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수요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

2~3 (생략)

4. 기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때

제9조(용자조건) ① 대출한도액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하 "2세대 이상 거주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주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용자금의.....

③시급고.....

④시급고.....

⑤시급고.....

제10조(추가용자) 시급고는.....

제11조(용자금의 상환) ①용자금.....

②용자금.....

③시급고는 용자금.....

.....용자금.....

1. 용자금.....

2~3 (현행과 같음)

4. 용자금.....

<p>제12조(변경상의 통보) 음자를 받은 자는 주소, 성명 등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u>금융기관</u>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3조(사후관리) 시장과 <u>금융기관</u>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음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u>기금의 관리상태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p> <p>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스업무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u>가스업무담당과장</u>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u>가스업무담당주사를</u>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p> <p>제15조(보고) <u>금융기관</u>은 기금의 운영상황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2조(변경사항의 통보)<u>시금고</u>.....</p> <p>제13조(사후관리)<u>시금고는</u>.....<u>융자금</u>.....</p> <p>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u>가</u> <u>스업무담당과장</u>을 <u>기금출납원</u>으로 한다.</p> <p>제15조(보고) <u>시금고는</u>.....</p>
---	---